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88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이인선 · 최은석 · 우재준  
김성원 · 안철수 · 박충권  
서일준 · 김상훈 · 고동진  
성일종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점검·평가를 통해 국유재산의 적절한 관리와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재 국유재산특례의 점검·평가 업무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수행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출연금 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그런데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는데, 현행법은 국유재산특례 평가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연구기관에 대한 정부 출연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국유재산특례 평가 관한 조사·연구가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6항).

법률 제 호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 중 “지급할”을 “출연할”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